

예탁증권담보용자 약관

제 1조 (약관의 적용)

예탁증권담보용자를 받고자 하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LIG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이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의무) 회사와 고객은 관계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대출의 종류) 예탁증권담보용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담보용자 : 고객이 예탁한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2. 매도담보용자: 고객이 예탁 증권을 매도하여 해당 주문이 체결된 경우, 매도한 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출약정의 신청)

- ① 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보유한 고객에 한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대출약정의 신청이 가능하다. 단, 회사의 흠토레이딩 약관을 승인한 고객에 한하여 흠토레이딩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출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에 서면으로 대출약정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흠토레이딩 약관을 승인한 고객에 한하여 흠토레이딩서비스를 통한 방법으로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대출약정 계약이 성립하면 고객은 회사가 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출약정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 ④ 대출약정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에도 대출약정은 유효하다.

제5조(대출거래의 제한)

- ① 회사는 회사가 판단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대출 총한도 초과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경우 해당일 전일부터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그 사실을 공시한다.
- ④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출거래 대상종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날로써 대출기간의 마지막 날을 상환기일로 한다. 단, 상환기일이 증권시장의 휴장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로 한다.

 1. 일반담보용자 : 고객이 대출을 받은 날부터 회사가 정한 기간이내로 한다.
 2. 매도담보용자 : 예탁 증권 매도주문 체결 후 고객이 대출을 신청한 날부터 증권시장에서 정한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7조(최고대출한도)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1인당 최고 대출한도를 대출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대출의 신청)

대출약정이 성립된 고객은 서면, 전화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과 약정한 증권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다.

제9조(담보의 징구)

① 회사는 대출금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일정비율(이하 “담보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

② 예탁증권담보용자의 담보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증권에 설정하는 질권으로 한다.

③ 회사는 담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 (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당일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 가격)로 한다. 다만, 「B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B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 2 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 가격을 말한다)

5.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을 담보평가 금액으로 한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질권설정에 대한 약정은 대출약정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 질권설정의 시기는 대출금 지급시로 한다.

⑦ 회사가 제1항의 담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 계좌에 두가지 이상의 대출이 있거나, 신용거래계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0조 (추가담보의 징구)

① 고객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일정 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할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해 회사가 정한 추가담보제공 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시 추가담보제공 기간 동안에 담보 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동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③ 제 3 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제11조 (대출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따라 대출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이자의 납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담보융자: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한다.

2. 매도담보융자 : 매도 유가증권의 결제일로 한다.

② 고객이 회사가 정한 대출이자를 약정 납입일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 등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대출의 상환)

① 일반담보융자의 경우 대출금 및 대출이자(이하 “대출금 등”이라 한다)는 각각 상환기일 및 대출이자의 납입일에 고객 증권계좌의 예수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상환된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경우 대출금 등은 당해 매도 증권의 결제일에 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상환된다.

③ 일반담보융자를 받은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또는 담보 증권을 매도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매도상환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된다.

제13조(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기일 내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 등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1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요구시 제10조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임의상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 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대출금 등의 상환요구를 받고 그 상환기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회사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회사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 ③ 회사는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자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담보권의 실행으로도 대출금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이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유가증권의 이자, 배당금, 무상신주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된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주문의 수탁 이외의 유가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인출

제17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별도 통지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의 선고를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변제기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 1 항 제 1 호 및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 1 항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익일 담보물을 임의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8조(중요사항의 변경) 회사는 필요한 경우 담보유지비율, 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의 징구비율, 추가담보제공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동안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19조(약관의 변경)

- ① 회사는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 등으로 사전통지하고, 그 밖에는 당해 변경 내용을 회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알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서면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회사는 이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하고 고객은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재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기재내용 변경상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이메일 주소 기타 연락장소 등 회사에 통지한 고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통지를 소홀히 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기타)

-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적용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예탁증권담보용자와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3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